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5. 8. 28.>

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

처리기간
3일

신청인	① 성 명		② 생년월일	
	③ 주 소	(전화:)		
④ 상 호(명 칭)				
⑤ 업 종				
⑥ 영업소 소재지		(전화:)		
⑦ 등록(허가)번 호				
⑧ 등록(허가) 연월일	. . .			
⑨ 재 발 급 사 유				

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라 □ 관광사업 등록증 □ 카지노업 허가증 □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□ 테마파크업 허가·신고증 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

※ 구비서류	수수료
등록증·허가증·신고증 또는 지정증(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	3,000원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